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3. 10. 18

1. 심 사 경 과

교육사회위원회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10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5회 임시회

○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3. 10. 18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청 관리국장 신 재 철)

가. 제 안 이 유

현행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방법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(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)이 불합리 함에 따라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○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일시납부시 대금의 1할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, 잔액은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완납하도록 함.

○ 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분할납부시 일반 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에 균등하게 분할납부하도록 함.

○ 이자율이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율을 적용하고,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함.

3. 검토 의견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이 불합리하여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일시납부·분할납부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,

지방재정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13624호, 90.11. 6)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하였으며,

일시납부가 곤란한 중요재산을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계약체결당시의 시중은행 일반 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등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고,

이자율은 령 제100조 제2항에서 정한 연 5푼 내지 2할의 범위내에서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인 5푼을 적용하고,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인 2할을 적용토록한 것 등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분할납부기간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경쟁의 공평성 침해 요인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토 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 사 결 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소수 의견 요지 : " 없 음 "

8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.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